

제 호

성매매피해자 ☐ 지원시설 ☐ 자활지원센터 ☐ 상담소
설치신고증명서

1. 지원시설(자활지원센터, 상담소) 명칭:
2. 소재지:
3. 시설의 종류:
4. 입소정원:
5. 운영자(법인)명:
(생년월일 또는 (법인)등록번호:)
6. 시설장(센터장, 상담소장) 성명:
(생년월일:)

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, 제15조제2항,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(자활지원센터, 상담소) 설치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(뒤쪽)

<변경사항>

[illegible]